

소방제도의 전환배경

- 소방행정은 정부수립후 국가 소방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자치소방을 실시하고, 시·군의 경우는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토록함으로서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자치소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소방본부를 두어 소방업무전반을 시장이 총괄, 지휘, 감독하고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토록하여 화재예방, 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국가소방제도로 운영도로있는 시·군의 소방서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휘·감독체계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시·군에서 운영되고있는 국가소방조직은 지역소방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이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배치되며, 인력은 일부 국가직공무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소방기관의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 기초자치단체(시·군) 중심의 소방사무는 재해가 광역화, 대규모화됨에 따라 1개 시·군의 소방력으로는 유효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함.
- 일반적으로 1개시·군으로는 재정이 빈약하여 고충건물, 위험물, 지하가동의 증가에 따른 소방력보강이 곤란하며 시·군간 소방력격차로 국민의 수혜가 불평등함.
- 그러므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소방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고 도시화된 2개이상의 시·군단위 자치단체를 권역화하여 소방관서를 설치, 인력, 장비, 재정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와 대형화 재시 인근 타소방관서와 상호응원체계가 용이하므로 그 책임자를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하여 단위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소방제도의 전환비고

구 분	현 행	변 경
1. 소 방 제 도	국가소방	자 치 소 방
2. 지 휘 체 계	시장·군수	도 지 사
3. 소 방 책 임	시장·군수	도 지 사
4. 소 방 조 직	소방과(1개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방호과 (1본부, 2개과)
5. 도 의 기 능	지도기능	지휘감독기능
6. 소 방 공 무 원 임 용	시장·군수	도 지 사
7. 소 방 공 동 시 설 세	시·군세	도 세
8. 지 방 교 부 세 배 정	시·군	도
9. 의용소방대설치운영권	시·군	도
10. 화재예방조례제정권	시·군	도
11. 소 방 예 산 편 성	시·군	도
12. 소 방 장 비 구 입	시·군	도
13. 관 할 구 역 조 정	1시 1군 1소방서	1~2시·군 권역화(광역)